밭식량작물 수매지원(융자)

세부사업명	산지유통활성화				세도		타민간 융자금	
내역사업명	밭식량작물수매지원				예신 (백만		9,400	
사업목적	○ 유통·가공 등에 필요한 국산 밭 식량작물의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, 계약재배 활성화, 수요업체 경영안정 도모							
사업 주요내용	○ 계열화경영체·밭작물공동경영체, 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, 밭식량작물 유통· 가공업체에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○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제57조제1항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○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[*] , 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, 밭식량작물(맥류, 두류, 서류, 잡곡류 등)을 유통하거나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*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는 밭작물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임							
지원한도	○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별 연간 30억원 이내							
재원구성 (%)	국고 -	지방비	-	융지	l 100	자부담	-	
연도별 재정투입 계획	구 분 합 계 융 자	2017년 33,851 33,851	2018년 16,851 16,851		2019년 16,851 16,851	2020 t	<u>: 백만원</u>) 년 이후 100 100	
담당기관		담당과		담당자		연락처		
농림축산식품 한국농수산4	룩부 닉품유통공사	식량산업과 정책금융부		이가인 한승희		044-201-1835 061-931-1142		
신청시기	수시			사업시행기관			민간	
관련자료	농산물수매지원(융자)사업 시행지침서 참조							

I / 주요내용

Ⅰ 사업개요

1. 목적

- 밭식량작물*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
 - * 「양곡관리법」상 맥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·서류를 뜻함(미곡 제외)

2. 근거법령

-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제57조(기금의 용도)
- 제57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.
 - 3. 농산물의 보관·관리 및 가공

3. 사업시행기관 및 대상자

- 사업시행기관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사업대상자
-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*, 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,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
 - *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는 밭작물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임

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지원형태 및 요건

- 지원형태: 국고융자
- 융자기간: 1년 이내
- 사업의무량: 대출금액의 125% 이상 밭식량작물 수매
- 지원조건: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
- (고정금리) 농업인·농업법인 2.5%, 그 외 3.0%
- (변동금리) 매월 변동(6개월 변동주기, 농협은행 담보대출잔액 가중평균금리)

2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국산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및 계약재배 선급금
- 밭식량작물의 유통 및 가공을 위한 원료 구매

3. 지원한도액 기준 및 우대조건

- 지원한도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별 연간 30억원 이내로 하되 여유 자금 발생 시 한도 이상 지원도 가능
- 우대조건: 생산농가와 업체 간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는 물량 우선 지원,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(예정)기업 우선 선정 지원

Ⅲ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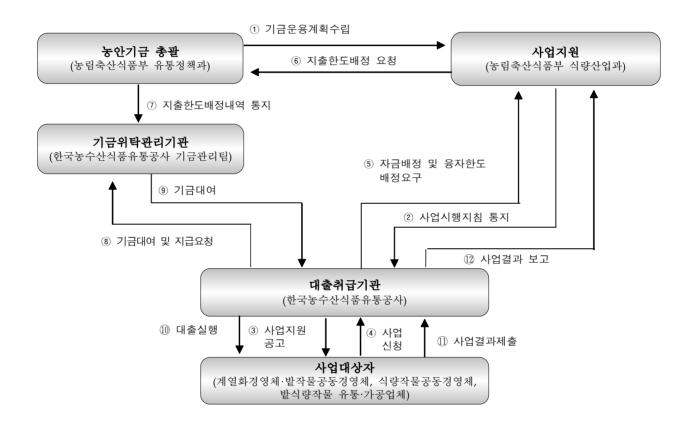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하고 사업을 시행
 - * 세부지원계획 수립 시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방안(지원업체 평가, 자금 지원규모 차등화 등) 및 품목별 세부 자금운영 계획(용도·시기별) 반영
-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사업시행기관별 세부지원계획은 홈페이지 게시, 지역본부에 공고 등을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에 적극 홍보

2.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단계

- '20년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(해당 지사)로 제출
- 사업시행지침서, 세부지원계획, 예산액, 신청수요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
- (계열화경영체·밭작물공동경영체, 식량작물공동경영체) 신청서 및 사업계획 서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전년도 수매·판매(판매처 포함) 서류 1부, 계약재배(출하약정서) 사본 1부, 사업참여농가 명부 1부 등
- (밭식량작물 유통·가공업체)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전년도 수매·판매(판매처 포함) 서류 1부 등
 - *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시행기관별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자금배정단계
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농식품 부에 지출한도액 배정 요청
-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
 - * 공사는 자금배정업체에 대출기한(배정일 또는 기금차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)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, 대출기한 내 미 대출 시 대출포기로 간주하고 여타 대출 희망업체에 추가 배정할 수 있음



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사업관리주체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

-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
- 사업관리주체는 지원대상업체의 사업추진실태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완료 시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- 대상품목 수매여부,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등 확인

○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의무량 미이행 또는 자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「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」제29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대출금 회수, 대출제한, 위약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농림축산 식품부에 통보

농림축산식품부

○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완료 시 사업관리주체로부터 정산결과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 보완 조치

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
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1년도 밭식량작물 수매지원사업 수요를 조사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('20.5월)
-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주체별 사업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

2.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○ 2020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